

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4480       |
| 의 퇴 인  | 나경원 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5. 11. 25. |
| 추 계 번호 | 25E6349       |

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

**【비용추계서】**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67억원 등 2027~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74억원(연평균 7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아이돌봄서비스<br>이용료 세액공제 신설<br>(안 제59조의4) | -67  | -70  | -74  | -79  | -85  | -374 | -75 |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| 안 제59조의4제5항<br>(특별세액공제) | ○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또는 만 9세 이하(3학년 이하)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아이돌봄 서비스 <sup>1)</sup> 이용료 15%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<br>(1명당 연 300만원 한도) |   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9조의4제5항(특별세액공제) | ○    |                |

1)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3호)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시행일 및 징수기준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설정
  - 개정안은 2026.1.1.부터 시행하고, 시행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
  - 2026년~2030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7년~2031년 발생(징수기준)
- 개정안에 따른 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 만 9세 이하 아동 1명을 양육하는 3인 가구(일반가정<sup>2)</sup>)의 양육자로 하고, 공제대상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이용료로 가정
  - 개정안은 공제대상을 취학 전 또는 만 9세(3학년) 이하인 초등학생인 자녀를 위해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이용비용으로 규정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증감률은 동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단가의 증감률과 같은 것으로 전제하여 향후 가구당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 이용료 비중은 최근(2024년) 수준을 유지하고, 동 서비스 이용 가구수 및 본인부담 이용료 규모는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
- 전체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,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별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중은 최근(2023년) 수준이 향후 추계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2)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가정을 일반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, 청소년부모가정 등으로 분류하여 일반가정 이외의 경우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요

-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<sup>3)</sup>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주거지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 서비스 제공
  -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영아종일제, 시간제, 질병감염아동지원 등으로 구분
    -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동 추계에서 제외

[표 2]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대상

| 종류           |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영아종일제 서비스    | 생후 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아                  |
| 시간제 서비스     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                |
|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|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|
| 기관연계 서비스     | 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   |

주: 시간제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과,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

자료: 여성가족부, 「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기준, 가구 특성(일반가정, 한부모가정 등), 아동 취학여부, 양육공백여부<sup>4)</sup>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정부에서 일정금액 지원
    - (소득기준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고, 금액 구간별로 가·나·다·라·마형으로 구분<sup>5)</sup>
      - 가형: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
      - 나형: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
      - 다형: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      - 라형: 양육공백 미발생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
- ※ 2025년부터는 라형을 양육공백 발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200%

3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조

4)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

5) 2024년 3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: 가형 3,37,000원 이내, 나형 5,322,000원 이내, 다형 6,653,000원 이내, 라형 6,653,000원 초과

이하 가구로 하며, 양육공백 미발생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200% 초과 가구를 마형으로 신설

- (아동 연령) 취학 여부에 따라 A·B형으로 구분
  - A형: 2024년 기준 2017. 1. 1. 이후 출생아동(미취학)
  - B형: 2024년 기준 2016. 12. 31. 이전 출생아동(취학)

[표 3]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: 2024년 기준  
(단위: 원)

| 구분 | 영아<br>종일제 |          | 시간제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|           |          | 기본형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종합형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|           |          | A형       |          | B형       |          | A형       |          | B형       |          |
|    | 정부<br>지원  | 본인<br>부담 | 정부<br>지원 | 본인<br>부담 | 정부<br>지원 | 본인<br>부담 | 정부<br>지원 | 본인<br>부담 | 정부<br>지원 | 본인<br>부담 |
| 가형 | 9,886     | 1,744    | 9,886    | 1,744    | 8,723    | 2,907    | 9,886    | 5,224    | 8,723    | 6,387    |
| 나형 | 6,978     | 4,652    | 6,978    | 4,652    | 3,489    | 8,141    | 6,978    | 8,132    | 3,489    | 11,621   |
| 다형 | 2,326     | 9,304    | 2,326    | 9,304    | 1,745    | 9,885    | 2,326    | 12,784   | 1,745    | 13,365   |
| 라형 | 0         | 11,630   | 0        | 11,630   | 0        | 11,630   | 0        | 15,110   | 0        | 15,110   |

주: 1. 일반가정 영아 1명 기준 이용요금표.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과,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  
자료: 여성가족부 자료(「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나. 추계 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2024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, 최근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수 증감률 및 동 서비스 이용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향후 추계기간의 세수효과 추계
- (2024년 기준 세수효과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유형별 가구당 부담금을 바탕으로 공제세액 추산 후,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수, 동 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비율, 근로소득자 중과세대상자 비율을 곱하여 2024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
  - (가구당 서비스이용 부담금) 2024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구평균 본인부담금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348만원, 시간제의 경우 220만원, 질병감염아동지원의 경우 13만원 등의 수준으로 집계

[표 4]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소득유형별 본인부담 현황: 2024년 기준  
(단위: 백만원, 가구)

| 구 분          |              | 가형     | 나형     | 다형     | 라형     | 전체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영아<br>종일제    | 총 본인부담금(A)   | 1,305  | 1,075  | 190    | 1,444  | 4,014   |
|              | 총 가구 수(B)    | 771    | 228    | 26     | 130    | 1,155   |
|              | 가구당 부담금(A/B) | 1.7    | 4.7    | 7.3    | 11.1   | 3.5     |
| 시간제          | 총 본인부담금(A)   | 45,232 | 41,127 | 14,509 | 39,160 | 140,028 |
|              | 총 가구수(B)     | 35,592 | 16,364 | 3,435  | 8,223  | 63,614  |
|              | 가구당 부담금(A/B) | 1.3    | 2.5    | 4.2    | 4.8    | 2.2     |
| 질병감염<br>아동지원 | 총 본인부담금(A)   | 219    | 268    | 92     | 226    | 805     |
|              | 총 가구수(B)     | 3,339  | 1,716  | 372    | 980    | 6,407   |
|              | 가구당 부담금(A/B) | 0.07   | 0.16   | 0.25   | 0.23   | 0.13    |

자료: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가구당 공제세액) 상기 소득유형별 가구당 본인부담금에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비율(15%) 및 한도(300만원)를 적용하여 공제세액 산출
  - 다만, 소득유형별 공제세액이 과세대상근로소득구간의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결정세액만큼만 공제
  -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에 해당하는 월소득 구간을 연간소득으로 환산(월소득×12개월)한 후, 해당 연간소득이 포함되는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의 1인당 결정세액 산출

[표 5]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소득유형별 가구당 공제세액 추정: 2024년 기준  
(단위: 만원)

| 구 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형        | 나형            | 다형            | 라형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소득 및<br>세액 | 월소득 <sup>1)</sup>        | 0 ~ 354   | 354 ~ 566     | 566 ~ 707     | 707 ~   |
|            | 연간소득 환산                  | 0 ~ 4,248 | 4,248 ~ 6,792 | 6,792 ~ 8,484 | 8,484 ~ |
|            | 결정세액 <sup>2)</sup> (A)   | 30        | 159           | 363           | 1,807   |
| 영아<br>종일제  | 가구당<br>본인부담금(B)          | 169       | 471           | 731           | 1,111   |
|            | 공제대상액<br>(C)=min[300, B] | 169       | 300           | 300           | 300     |
|            | 공제세액<br>min[A, (C×15%)]  | 25        | 45            | 45            | 45      |

| 구 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형  | 나형  | 다형  | 라형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시간제          | 가구당<br>본인부담금(B)          | 127 | 251 | 422 | 476 |
|              | 공제대상액<br>(C)=min[300, B] | 127 | 251 | 300 | 300 |
|              | 공제세액<br>min[A, (C×15%)]  | 19  | 38  | 45  | 45  |
| 질병감염<br>아동지원 | 가구당<br>본인부담금(B)          | 7   | 16  | 25  | 23  |
|              | 공제대상액<br>(C)=min[300, B] | 7   | 16  | 25  | 23  |
|              | 공제세액<br>min[A, (C×15%)]  | 1   | 2   | 4   | 3   |

주: 1) 월소득은 각 소득유형별 2024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

2)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의 2023 귀속연도 기준 과세대상근로소득(총급여) 구간별 1인당 결정세액(‘가’: 4천만원 이하, ‘나’: 4천만원~6천만원, ‘다’: 6천만원~8천만원, ‘라’: 8천만원 초과)

- (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수)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, 만 9세 이하 아동(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동 요건)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통계청의 2024년 주민등록연앙인구 상 만 12세 이하 인구 중 만 9세 이하 인구 비율(69.9%)를 적용하여 전체 서비스 이용가구 중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가구수 추정
  -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아동의 취학여부에 따라 A형(취학 전)과 B형(취학 후)으로 구분되고 있으며, 소득기준 외 A형/B형에 따른 구분 통계 및 B형 내 세부 나이별 통계가 부재

[표 6] 공제 적용대상(만 9세 이하 아동대상)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수 추정  
(단위: 가구)

| 구 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형     | 나형     | 다형    | 라형    | 전체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시간제       | 총 이용 가구수(A)                  | 35,592 | 16,364 | 3,435 | 8,223 | 63,614 |
|           | 공제 적용대상 서비스 이용 가구수 (A×69.9%) | 24,897 | 11,447 | 2,403 | 5,752 | 44,498 |
| 질병감염 아동지원 | 총 이용 가구수(A)                  | 3,339  | 1,716  | 372   | 980   | 6,407  |
|           | 공제 적용대상 서비스 이용 가구수 (A×69.9%) | 2,336  | 1,200  | 260   | 686   | 4,482  |

주: 아동의 나이별 서비스 이용각수 등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 전체 서비스 이용가구수에 주민등록연앙 인구 상 만 12세 이하 인구 중 9세 이하 인구의 비중(69.9%)를 적용하여 만 9세 이하 아동 대상 서비스 이용가구 수를 추정함

자료: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중) 「국세통계연보」 상 2023년 귀속연도 기준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별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율을 적용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중 추정

- 2024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에 해당하는 월소득 구간을 연간소득으로 환산(월소득×12개월)한 후, 해당 연간소득이 포함되는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의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율 계산
-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은 가형 48.8%, 나형 90.9%, 다형 99.0%, 라형 99.9%로 나타남
- 상기 추정 비율은 향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
[표 7] 소득유형별 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: 2024년 기준  
(단위: 만원, %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가형        | 나형            | 다형            | 라형      | 전체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월소득 <sup>1)</sup>      | 0 ~ 354   | 354 ~ 566     | 566 ~ 707     | 707 ~   | -    |
| 연간소득 환산<br>(과세대상근로소득)  | 0 ~ 4,248 | 4,248 ~ 6,792 | 6,792 ~ 8,484 | 8,484 ~ | -    |
| 과세대상자 비율 <sup>2)</sup> | 48.5      | 93.1          | 99.3          | 99.9    | 67.2 |

주: 1) 월소득은 각 소득유형별 2024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

2)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의 2023 귀속연도 기준 과세대상근로소득(총급여) 구간별 과세대상자 비율  
(‘가’: 4천만원 이하, ‘나’: 4천만원~6천만원, ‘다’: 6천만원~8천만원, ‘라’: 8천만원 초과)

- (2024년 기준 세수효과) 2024년 기준 소득유형별 가구당 공제세액에 서비스 이용가구수, 이용가구 내 근로소득자 비율,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

자 비율을 각각 곱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63억원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 세수효과: 2024년 기준

(단위: 만원, 가구, %)

| 구 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형      | 나형      | 다형     | 라형      | 합계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영아<br>종일제    | 공제세액(A)                 | 25      | 45      | 45     | 45   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공제 적용대상<br>서비스 이용가구수(B) | 771     | 228     | 26     | 130  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근로소득자 비율(C)             | 61.2%   | 61.2%   | 61.2%  | 61.2%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과세대상자 비율(D)             | 48.8%   | 90.9%   | 99.0%  | 99.9%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세수효과(A×B×C×D)           | 5,841   | 5,703   | 709    | 3,574   | 15,826  |
| 시간제          | 공제세액(A)                 | 19      | 38      | 45     | 45   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공제 적용대상<br>서비스 이용가구수(B) | 24,897  | 11,447  | 2,403  | 5,752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근로소득자 비율(C)             | 61.2%   | 61.2%   | 61.2%  | 61.2%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과세대상자 비율(D)             | 48.8%   | 90.9%   | 99.0%  | 99.9%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세수효과(A×B×C×D)           | 141,660 | 239,863 | 65,509 | 158,128 | 605,160 |
| 질병감염<br>이동지원 | 공제세액(A)                 | 1       | 2       | 4      | 3    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공제 적용대상<br>서비스 이용가구수(B) | 2,336   | 1,200   | 260    | 686  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근로소득자 비율(C)             | 61.2%   | 61.2%   | 61.2%  | 61.2%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과세대상자 비율(D)             | 48.8%   | 90.9%   | 99.0%  | 99.9%   | —       |
|              | 세수효과(A×B×C×D)           | 686     | 1,562   | 585    | 1,448   | 4,281   |
| 합 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148,187 | 247,128 | 66,803 | 163,150 | 625,268 |

- (추계기간 세수효과) 최근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수 및 이용료의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 추계기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서비스유형 및 소득유형에 따라 2024년 기준 세수효과에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추계
  - (서비스 이용가구수 증감률) 최근 4년간(2021년~2024년)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수의 연평균 증감률이 추계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
[표 9]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수: 2021~2024년

(단위: 가구, %)

| 구 분          | 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 2024   | 연평균 증감률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영아<br>종일제    | 가형 | 1,622  | 1,779  | 1,231  | 771    | -22.0%  |
|              | 나형 | 791    | 708    | 440    | 228    | -33.9%  |
|              | 다형 | 89     | 56     | 36     | 26     | -33.6%  |
|              | 라형 | 325    | 217    | 183    | 130    | -26.3%  |
|              | 계  | 2,827  | 2,760  | 1,890  | 1,155  | -25.8%  |
| 시간제          | 가형 | 28,415 | 30,321 | 32,707 | 35,592 | 7.8%    |
|              | 나형 | 15,437 | 14,066 | 15,973 | 16,364 | 2.0%    |
|              | 다형 | 3,969  | 3,014  | 3,166  | 3,435  | -4.7%   |
|              | 라형 | 13,292 | 9,567  | 9,096  | 8,223  | -14.8%  |
|              | 계  | 61,113 | 56,968 | 60,942 | 63,614 | 1.3%    |
| 질병감염<br>아동지원 | 가형 | 1,106  | 2,060  | 2,943  | 3,339  | 44.5%   |
|              | 나형 | 516    | 1,056  | 1,589  | 1,716  | 49.3%   |
|              | 다형 | 179    | 261    | 327    | 372    | 27.6%   |
|              | 라형 | 614    | 793    | 1,132  | 980    | 16.9%   |
|              | 계  | 2,415  | 4,170  | 5,991  | 6,407  | 38.4%   |

자료: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서비스 이용료 증감률)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이용료의 평균 증감률이 추계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
[표 10]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: 2021~2024년

(단위: 원)

| 구 분   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 2024   | 연평균 증감률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영아종일제    | 10,040 | 10,550 | 11,080 | 11,630 | 5%      |
| 시간제      | 11,545 | 12,135 | 12,740 | 13,370 | 5%      |
| 질병감염아동지원 | 12,050 | 12,660 | 13,290 | 13,950 | 5%      |

주: 일반가정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, 시간제의 경우 기본형 요금과 종합형 요금의 평균금액

[표 11]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

|              |    | 2026 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2030   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영아<br>종일제    | 가형 | 3,924   | 3,216   | 2,636   | 2,160   | 1,771   |
|              | 나형 | 2,745   | 1,904   | 1,321   | 916     | 636     |
|              | 다형 | 344     | 240     | 167     | 116     | 81      |
|              | 라형 | 2,140   | 1,656   | 1,281   | 992     | 767     |
|              | 계  | 9,153   | 7,016   | 5,405   | 4,185   | 3,255   |
| 시간제          | 가형 | 181,527 | 205,489 | 232,614 | 263,320 | 298,079 |
|              | 나형 | 275,004 | 294,460 | 315,293 | 337,600 | 361,485 |
|              | 다형 | 65,608  | 65,658  | 65,707  | 65,757  | 65,807  |
|              | 라형 | 126,608 | 113,289 | 101,371 | 90,707  | 81,164  |
|              | 계  | 648,747 | 678,896 | 714,986 | 757,384 | 806,535 |
| 질병감염<br>아동지원 | 가형 | 1,581   | 2,399   | 3,640   | 5,524   | 8,383   |
|              | 나형 | 3,838   | 6,015   | 9,427   | 14,775  | 23,156  |
|              | 다형 | 1,051   | 1,408   | 1,886   | 2,527   | 3,387   |
|              | 라형 | 2,180   | 2,675   | 3,282   | 4,028   | 4,943   |
|              | 계  | 8,649   | 12,496  | 18,235  | 26,854  | 39,869  |
| 합계           |    | 666,548 | 698,408 | 738,627 | 788,423 | 849,659 |

#### 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67억원 등 2027~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74억원(연평균 7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아이돌봄서비스<br>이용료 세액공제 신설<br>(안 제59조의4) | -67  | -70  | -74  | -79  | -85  | -374 | -75 |

## 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 V. 작성자

☐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세제분석1과  | 신홍철 | 박연서 |

☐ 대표연락처
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홍철 | 02-6788-4745 | hongfe@assembly.go.kr |